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2. 6. 4 국무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「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」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“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시책”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 조례중 일부 미흡한 조문내용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진주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으며, 도내 남해, 사천, 거창군에서는 2004년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음에 비추어 볼때, 우리군에서도 현행 조례중 일부 미흡한 조문내용 등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조례안 제14조 제2항 제13호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된 사유는 ?
- 답 : 보건복지부,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7. 1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